

日本の 排他的 經濟水域 宣布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

제 성 호*

◁ 目 次 ▷	
I. 序 論	IV. 일본의 EEZ 宣布의 影響 및 波及效果
II. 排他的 經濟水域의 概念과 法的 性格	V. 韓國의 對應方案
III. 日本의 排他的 經濟水域 宣布 背景	VI. 結 論

I. 序 論

최근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UNCLOS)¹⁾ 批准을 계기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xclu-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1973년 12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에서는 10여년에 걸쳐 해양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심의하고, 1982년 4월 30일 자메이카의 몬테고베이에서 마침내 바다의 헌법, 해양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였다. 1982년 12월 10

sive Economic Zone : 이하 EEZ라 함) 선포방침을 결정하고 必要한 國內 節次를 거치고 있다. 일본은 1996년 2월 20일 閣議에서 EEZ 선포방침을 결정하고, 가자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관방장관이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였다. 그후 일본 衆議院은 1996년 5월 28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한국 및 중국 등과 영유권분쟁을 빚고 있는 도서까지 포함하는 200해리 EEZ를 선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²⁾

일본의 EEZ 선포는 앞으로 동북아, 특히 동해에서의 기존 어업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한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EEZ를 선포할 경우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獨島가 동 EEZ의 범위내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일본의 조치로 한·일간에 독도영유권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일본의 EEZ 선포가 가져올 파급효과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排他的 經濟水域의 概念과 法的 性格

1. EEZ의 概念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란 영해를 넘어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그 해저, 지하, 상부수역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그리고 해양과학조사, 환경보호 등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인

일 유엔해양법협약은 署名을 위해 개방되었고, 60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지 1년이 경과한 후인 1994년 11월 16일에 비로소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29일 유엔해양법협약을 批准하였으며,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동년 2월 28일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2) 「東亞日報」, 1996년 5월 29일.

정되는 수역을 말한다.³⁾ EEZ는 包括的 領海主義와 包括的 機能主義의 타협적 산물로서 準機能的 性格을 갖는 연안국의 多目的的 國家管轄權(multi-purpose functional jurisdiction)이 미치는 영해 이원의 수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EEZ의 폭(범위)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⁴⁾ 國家慣行도 일반적으로 200해리를 채택하고 있다. 200해리를 기준으로 한 것은 地理的 生態學的 또는 生物學的 意味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歷史的 政治的인 理由 때문이다.⁵⁾

2. EEZ의 法的 性格

가. 法的 性格

EEZ는 공해나 영해와는 달리 獨特한 法的 性格을 갖는 제3의 特別水域으로서 말하자면 영해와 공해 사이의 中間的 性格을 갖는 法制度(*sui generis legal regime*)라 할 수 있다.⁶⁾ EEZ에서는 영해에서와 같이 완전한 주권이 미치지 않으며, 또한 공해와 같이 외국선박이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는 수역도 아니다. 그 대신 연안국의 다양한 國家管轄權과 더불어 公海自由의 一部(즉 공해자유 원칙이 일부 타당함)가 병존한다는 점에서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수역이라고 할 수 있다.⁷⁾ 그렇다고 해서

3) Shigeru Oda, "Exclusive Economic Zone,"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msterdam : North Holland, 1989), pp. 102~103.

4) 유엔해양법협약 제57조.

5) R. R. Churchill and A. V. Lowe,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 Manchester Univ. Press, 1983), p. 126.

6) Ibid., p. 130; Nasila S. Lembe, *Africa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lphen aan den Rijn : Sijthoff & Noordhoff, 1980), p. 123 ; D. P.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II (Oxford : Clarendon Press, 1982), p. 557.

7) EEZ문제는 이 해양법협약의 채택과정에서 아킬레스건의 하나였었다. 심의과정에서 참가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EEZ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여러가지 주장을 하였다. 먼저 급진적인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 EEZ에 대해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의 범위

EEZ를 殘餘의 公海(residual high seas)나 殘餘의 領海(residual territorial sea)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⁸⁾

한편 地理的 意味의 대륙붕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점에서 屬地的인 性格을 갖는데 비해, EEZ는 전적으로 距離概念으로 제한을 받는 점에서 속지적 性格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EEZ에서의 연안국의 권능은 대륙붕의 경우와 구별된다.⁹⁾

나. 特 性

EEZ는 ① 機能的 包括性(functional comprehensiveness), ② 管轄權의 排他性(jurisdictional exclusivity), ③ 空間的 廣域性(spatial extensiveness) 등의 고유한 特性을 갖는다.

첫째, EEZ는 기능적으로 포괄성을 갖는 수역이다. 즉 EEZ는 해양의 경제적 이용과 관련있는 포괄적 기능을 연안국의 主權的 權利(sovvereign right) 또는 관할권에 종속시킴으로써 종래의 公海自由制度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 왔다. 이것은 연안국의 管轄權 擴張要求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EEZ는 管轄權의 排他性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점을 연안국이 생

를 200해리까지 확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콜롬비아, 멕시코처럼 태평양에 대륙붕을 갖지 않는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 EEZ은 「世襲水域」(patrimonial sea)으로서 12해리 이원에서 제3국의 항행자유를 보장하면서, 역내국가들에 의한 해양자원의 공동관리·분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수역이라고 주장하였다. 나머지 제3세계 국가들은 EEZ으로서의 성격, 즉 어업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외국인의 조업에 대한 허가를 강조하였다. 미국·소련·일본과 같은 원양어업국들은 EEZ에 있어서 연안국에게는 「優先的인 漁業權」(preferential right of fishing)만 인정하고, 어획능력을 초과하는 허용어획량의 잉여분에 대해서는 외국에게 어업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山本草二, 「海洋法と國內法制」(東京: 日本海洋協會, 1988), pp. 74~75.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제3세계 국가의 주장을 골격으로 각국이 이에 대해 타협함으로써 결국 연안국의 主權的 權利가 인정되는 EEZ제도가 창설되게 되었다.

8) Churchill and Lowe, *The Law of the Sea*, p. 129 참조.

9) 山本草二, 「國際法」(東京: 有斐閣, 1985), p. 334.

물자원과 비생물자원에 대해 각각 행사하는 권리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생물자원의 경우, 연안국의 권리는 과거 자원보존의 권리 또는 優先的 權利(preferential rights)의 성격을 가졌었는데, 이러한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 지금은 主權의 權利로 발전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생물자원에 대한 제3국의 접근은 沿岸國의 同意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다음 비생물자원의 경우, 기존의 대륙붕제도에 의해 규율되던 것이 EEZ 제도에 의해 수용되었다. 따라서 EEZ에서의 비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권능(주권적 권리)의 내용은 연안국이 대륙붕에서 갖는 주권적 권리와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로 제3국은 EEZ에서의 비생물자원에 대해 연안국의 同意 없이는 開發·探查할 수 없고 先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¹⁰⁾

셋째, EEZ는 空間的 廣域性을 특징으로 한다. 종래의 해양국제법제도, 즉 1958년의 제네바 해양법협약체제하에서는 연안국의 국가관할권이 최대 12해리에 한정되었었다.¹¹⁾ 그러나 EEZ는 200해리의 폭을 인정하기 때문에 연안국은 이전보다 훨씬 광대한 해양을 점할 수 있게 되었다. 연안국의 EEZ에서의 垂直的 管轄權은 자연자원의 탐사와 개발, 그리고 그 보존과 관리에 관한 한 상부수역·해중·해상 및 하층토를 포괄하는 立體的·集約的인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10) Churchill and Lowe, *The Law of the Sea*, pp. 130~131 ; Shigeru Oda, "Exclusive Economic Zone," p. 106 참조.

11) 1958년 4월 29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1964년 9월 30일 발효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24조 2항에서는 연안국이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이민), 위생 등의 법규위반을 방지하고 규제할 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이른바 接續水域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범위내에서 설정될 수 있었다.

12) 물론 이와 같이 EEZ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이 包括性과 立體性을 띠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자원의 탐사와 개발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토에 대해 미치는 영역주권보다는 포괄성과 입체성이 덜 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山本草二, 「國際法」, p. 334 ; 桑原輝路, 「海洋國際法」(東京: 國際書院, 1992), pp. 95~96 참조.

3. EEZ에서의 沿岸國의 權利와 義務

가. 沿岸國의 權利

전술한 바와 같이 EEZ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연안국이 이 수역에서 천연자원의 利用 保存 管理 등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EEZ에서의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 행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 따른다. 또한 EEZ가 주로 자원의 이용을 위한 관할권인 만큼 외국선박은 공해에서와 마찬가지로 通航의 自由 (freedom of navigation)를 가진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여 EEZ의 排他性 (exclusivity)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연안국이 EEZ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권능 및 權原이란 것은 결국 다른 연안국이나 원양어업국이 행사할 수 있는 그것들과 機能的으로 公平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이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이 EEZ에서 갖는 권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안국의 권리는 主權의 權利와 管轄權으로 대별된다. 이 두 용어 내지 개념이 국제법상 명백히 정의되어 있거나 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主權의 權利는 領域主權과는 다른 것으로 연안국의 자원개발과 그 밖의 經濟的 目的 등 일정한 목적과 기능을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관할권은 주권적 권리보다 더 제한된 연안국의 일정한 권능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⁴⁾

첫째,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부수역과 해상 및 그 하층토에 부존된 生物 또는 非生物資源의 探查와 開發, 그리고 保存 利用과 管理를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보존·이용과 관리는 주로 생물자원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생물자원의 보존·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적 권리는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종속하며,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연안국

13) Ibid.; 李漢基, 「新稿 國際法講義」(서울: 博英社, 1990), p. 355.

14) 山本草二, 「國際法」, p. 334 참조.

의 권리는 대륙붕제도에 따라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연안국은 해수와 조류 및 바람을 이용한 동력의 생산과 같은 그 밖의 경제적 이용과 탐사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향유한다.¹⁵⁾ 이 권리는 생물 또는 비생물자원에 대한 경제적 권리 외에 장래의 해양에 대한 경제적 이용양태를 포괄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연안국은 인공도서와 시설이나 구조물의 설치와 이용, 해양의 과학적 조사, 海洋環境의 보전을 위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¹⁶⁾ 이 권리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해양이용의 적극화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넷째, 연안국은 자국의 경제수역내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고 규제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다.¹⁷⁾ 그러나 연안국은 자원의 탐사와 개발과 직접 관련된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의 조사활동을 제외한 통상적인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¹⁸⁾ 그러나 이 문제는 해양선진국과 연안국과의 사이에 이해충돌이 심한 문제로서 관할권행사의 해석에 따라 연안국의 동의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연안국은 海洋生態(marine ecology)의 보존·유지를 위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沿岸國의 義務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도 옹분의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¹⁹⁾ 외에도 몇가지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연안국은 이용가능한 최신의 과학적 자료를 참고하여 적절한 보존

15)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1항 (a)호.

16)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1항 (b)호 ; Shigeru Oda, "Exclusive Economic Zone," pp. 106~107 참조.

17)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1항 (b)호 참조.

18) 유엔해양법협약 제246조 1항, 3항 및 5항 참조.

19)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1항 (c)호 참조.

과 관리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남획으로 인하여 생물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²⁰⁾ 또한 그러한 조치는 어획한 어족의 最大持續的 生産性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그 유지나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연안국은 EEZ내의 생물자원의 最適利用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허용되는 채취량을 결정하고, 그 全量을 자국이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협정이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국가에게 그 잉여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²¹⁾ 그리고 외국의 EEZ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국가의 국민은 保存措置와 關係法の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²²⁾

셋째, 모든 국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EEZ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 및 해저전선 및 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를 갖는다.²³⁾ 이러한 결과로 연안국은 모든 제3국에 대해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해 줄 의무를 진다.

넷째,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다.²⁴⁾ 해상기동훈련이나 무기의 실험도 항행에 관련된 해양의 이용인 것은 분명하고, 과거에는 공해상에서의 그러한 행위가 합법성을 인정받아 왔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훈련이나 연습을 어느 정도까지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공해는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유보되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제88조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하다.²⁵⁾

20) 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 2항 전단 참조.

21) 유엔해양법협약 제62조 1항 및 2항 참조.

22) 유엔해양법협약 제62조 4항 참조.

23)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1항 전단 참조.

24) Ken Booth, *Law, Force and Diplomacy at Sea*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85), p. 139.

25) Churchill and Lowe, *The Law of the Sea*, p. 134.

III. 日本의 排他的 經濟水域 宣布背景

1. 東北亞 域內國家의 海洋管轄權 宣布現況

일본의 EEZ 선포배경을 살펴 보기에 앞서 먼저 동북아 역내국가의 해양 관할권 선포현황을 검토하기로 한다.²⁶⁾ 여기서는 영해와 경제수역을 중심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가. 韓 國

한국은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1952년 1월 18일 처음으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적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기간중 일본어선들이 독도근해에 출어하여 엄청난 양의 어족자원을 남획해 가자 우리나라 연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 일명 「平和線」(Peace Line, Rhee Line)을 선포하였다.²⁷⁾ 이 평화선내에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독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후 한국은 1965년 12월 18일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한·일 양국 어민들의 어업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韓·日漁業協定」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동해에서는 평화선에 의한 해양관할권 주장과 모순되는 어업질서가 한·일간에 형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이 평화선의 효력지속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다. 따라서 한·일간에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26)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臺灣의 경우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27) 평화선은 우리 연안에서 50~100해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평화선 선포배경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 및 한·일간의 어업문제에 관한 협상경과 등에 관해서는 池鐵根, 「平和線」(서울: 汎友社, 1979) 참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후 한국은 1977년 12월 31일 영해의 범위와 기선, 영해내에서의 외국선박 통항 규제, 군함에 대한 특례, 벌칙 등을 정하기 위해 領海法을 제정하였다. 이어 1978년 9월 20일 영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해법시행령을 제정하였다.²⁸⁾ 한편 1995년 12월 31일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접속수역의 설정을 위해 舊 영해법을 개정·보완하여 「領海 및 接續水域法」을 제정하였다.

한편 한국의 국무회의는 1996년 6월 11일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에 대한 대비차원에서의 국내입법차원과 동시에 일본의 EEZ 선포 움직임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해 EEZ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排他的 經濟水域法(案)」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선까지의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EEZ로 설정하되, 인접국과의 경계는 관계국과 합의에 의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안은 이 수역내에서 천연자원 개발·보존 등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외국 및 외국인에 대해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의 자유, 기타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에 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 같은 날 일본, 중국의 EEZ선포에 따른 새로운 어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EEZ내에서의 외국인 어업활동을 규제하는 등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안을 확정하여,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EEZ에서 어업자원보호등을 위해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특정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이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고 入漁料를 내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外國人漁業管理法(案)」도 심의·의결하였다.²⁹⁾

28) 朴椿浩, 「海洋法」(서울: 민음사, 1986), pp. 46~47.

29)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외국인이 대한민국 EEZ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적용되어 오던 수산업법 대신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동 시행령, 「배타적 경제수역법안」,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관리법안」이 제정되면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기본적인 법질서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⁰⁾

나. 日 本

1970년대 초반까지는 원양어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200해리 EEZ 개념의 등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1976년 회기까지 200해리 경제수역 또는 어업수역에 대해 반대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³¹⁾

1977년부터 미국, 캐나다, 소련이 유엔해양법회의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200해리 수역을 잇달아 선포하자, 일본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해 漁業에 관한 海洋管轄權 制度를 정비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련의 어선이 대량으로 일본의 연안에 출어하여 조업을 하

이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EEZ내에서의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금지되는 「특정금지구역」을 설정한다. 둘째, 외국인이 EEZ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수산청장의 허가를, 그리고 시험·연구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어업에 관해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입어료를 납부해야 한다. 넷째,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섯째, 해난사고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EEZ내에서 어획물 및 제품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지 못한다. 여섯째,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 또는 선박에 대해서는 입검 및 나포를 할 수 있다.

30) 이에 앞서 한국은 1970년 1월 1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에 관한 법체제는 현재 이 「해저광물자원개발법」과 영해법 및 동 시행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31) Robert L. Freidheim, *Japan and the New Ocean Regime*(Colorado : Westview Press, 1984), pp. 44~46 참조.

기에 이르자,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1977년 「領海法」과 더불어 「漁業水域에 관한 暫定措置法」(법률 제31호)³²⁾을 제정·실시하였다. 이 법에서는 200해리 排他的 漁業水域(Exclusive Fishery Zone : EFZ)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일본도 200해리 해양관할권을 주장하는 국가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일본의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은 ① 「EEZ」가 아닌 「어업수역」의 명칭을 채택한 점, ② 政令(시행령)에의 위임을 통한 융통성있는 운용, ③ 한국 및 중국(즉 東海와 東支那海)에 대한 200해리 어업수역 적용 유보, ④ 일본의 연안에서의 「어업, 수산·동·식물의 採捕」 등 분야의 활동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엔해양법협약의 EEZ 개념과 주권적 권리정보다 약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參議院은 1996년 6월 7일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승인안과 함께 「排他的 經濟水域內 漁業 등에 대한 主權的 權利行使에 관한 法」(이하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업주권행사법」이라 함)을 포함한 8개의 법을 일괄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통과시켰다.³³⁾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업주권행사법」에서 연안국주의와 어획량 직접규제 방식 도입 등을 명기하는 한편, 이에 따른 어업규제와 처벌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일본은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업주권행사법」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적용제외를 골자로 지난 1977년 제정된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을 폐지하고 200해리 EEZ에서의 외국선박 조업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등 EEZ내 어업주권의 전면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업주권행사법」은 첫째, EEZ내 외국인의 어업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되, 조업시에는 일정절차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받아 入漁料를 지불하며, 둘째, 법령 위반시 어업허가를 취

32)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은 1977년 5월 2일 제정되었으며, 동법의 영문표기는 “Law on Provisional Measures Relating to the Fishing Zone”로 되어 있다. 이 법의 英文全文은 *United Nations Legislative Series*, vol. 19 (1978), pp. 226~240를 참조.

33) 「中央日報」, 1996년 6월 8일; 「世界日報」, 1996년 6월 8일 참조.

소하고 선박나포, 선원구속, 어획물 몰수 및 추징, 최고 1천만엔의 벌금형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이 법에서 현행 기국주의에서 일본이 불법조업에 대한 團束權限을 갖는 연안국주의로 전환하는 것과 선박착수 등만을 제한해 온 간접규제 대신 총어획가능량(TAC) 규제를 통한 직접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업주권행사법」 등 관련 8개 법은 늦어도 1996년 7월말로 예상되는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안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동법은 한국, 중국과 어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을 통해 일정 기간에 한해 적용을 留保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연립여당측이 어업협상의 타결시한으로 1년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현행 한·일어업협정의 경우 어느 한쪽이 통보할 경우 1년뒤 폐기되도록 되어 있어 일본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와 함께 領海 및 接續水域에 관한 法律」을 통해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직선기선을 새로 도입하고 통관위반행위 적발, 단속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접속수역(영해로부터 12해리)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北 韓

북한은 해양문제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과 입장을 같이 해 왔다. 먼저 영해에 관해서 보면, 북한은 아직까지 영해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고, 또한 公式的으로 領海宣言을 한 바 없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영해의 基線은 고사하고 영해의 범위가 공표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12해리의 영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⁴⁾ 한편 북한은 국제법상 유례가 없는 軍事境界水域(military boundary zone)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³⁵⁾

34) 예컨대 金燦奎, 朴椿浩, 金楨鍵 교수 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 학자들의 통설적 견해이기도 하다.

북한은 EEZ에 관해서는 영해와 달리 그들의 국가의사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EEZ의 개념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논의되었을 때, 북한은 여기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견지하였다.³⁶⁾ 그것은 연안국이 넓은 수역을 확보할 수 있는 EEZ개념은 북한에게 더할 나위없이 좋은 제도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1977년부터 미국, 캐나다, 소련 등이 EEZ를 실시하자 북한도 1977년 6월 21일자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EEZ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³⁷⁾ 북한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결과를 채 기다리지 않고 비교적 빨리 EEZ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의 EEZ 선포조치는 1977년 일본이 제정한 「어업수역잠정조치법」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로서 외국 선박이 북한 연안수역에서 행하는 불법적인 어로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둘째, 일본, 중국, 구소련 등 주변국가들과의 관계(특히 대일 어업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특히 동 조치는 북한이 일본과의 민간어업협정을 유리한 입장에서 조기에 타결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 관한 정령」에 의하면, 북한은 바다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적극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200해리 EEZ를 설정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영해의 起算線에서 200해리를 그 범위로 하고, 둘째, 200해리 경제수역을 그을 수 없는 수역에서는 바다 半分線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셋째, 수중·해저 및 그 지하를 포함하는 동 수역내의 生物과 非生物 資源에 대해서는 自主權을 행사하고, 넷째, 북한의 事前承認 없이 외국인들과 외국선박, 외국항공기들이 그들의 경제수역 안에서 고기잡이, 시설물설치, 탐

35) 諸成鎬, “북한의 국제법 인식체계와 사례연구,” 統一院, 「北韓·統一研究 論文集-(VI) 國際關係分野」(서울: 統一院, 1990), pp. 77~80 참조.

36) UNCLOSⅢ, *Official Records*, vol. II, 1975, p. 215 참조.

37) 「로동신문」, 1977년 7월 1일 참조.

사 개발 등 그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제행위와 바다물오염(해양오염), 大氣汚染을 비롯한 인민과 자원에 유해한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³⁸⁾

한편 북한은 그들의 EEZ에 대한 관할권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외국인과 외국선박 및 외국비행기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³⁹⁾을 제정했다. 政務院 決定 제160호로 제정된 이 規程은 1978년 8월 12일에 공포되고 198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라. 中 國

중국은 1958년 9월 4일 이른바 「中華人民共和國政府關於領海的聲明」(영해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영해선언을 한 바 있다. 여기서 중국은 “中華人民共和國領海寬度爲十二海里(浬)”라고 밝힘으로써 영해의 범위가 12해리임을 분명히 하였다.⁴⁰⁾ 그후 중국은 1992년 2월 25일 「中華人民共和國領海及毗連區法」(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영해가 12해리임을 정식으로 규정하였다.⁴¹⁾ 한편 최근 중국은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고 한·중간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입지강화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영해기선(直線基線)의 채택을 발표한 바 있다.⁴²⁾

38) 金楨鍵, “海洋法에 대한 北韓의 態度에 관한 考察,” p. 343; 李昌偉, “經濟水域 實施와 관련된 法的 問題,” 「서울국제법연구」, 제2권 1호 (1995), pp. 26~27.

39) 金燦奎, “北韓의 經濟水域에 대한 考察,” 「北韓法律行政論叢」, 제5집 (1982), pp. 93~96; 金楨鍵, “海洋法에 대한 北韓의 態度에 관한 考察,” 「法律研究」, 제4집 (1986), pp. 341~343 참조.

40) 國家海洋局海洋管理監測司法規處, 「中華人民共和國海洋法規選編」(北京:北京海洋出版社, 1991), pp. 1~4; 史逮心, 「現代國際法教程」(安徽省合肥市:中國科學技術大學出版社, 1993), p. 156; “Declaration on China’s Territorial Sea, September 4, 1958,” *Peking Review*, vol. 1, no. 28 (September 9, 1958), p. 21 참조.

41)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7차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제2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金燦奎, “中國의 領海法과 基線,” 「國際法學會論叢」, 제39권 1호 (1994), pp. 17, 20.

42) 「동아일보」, 1996년 5월 16일.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EEZ를 선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와 관련, 중국도 일본과 한국이 금년내에 EEZ를 선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EEZ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³⁾

마. 러시아

러시아(구소련)는 1960년 8월 5일 「蘇聯國境保護法」(Statute on the Protection of the State Boundary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을 제정하여 12해리 영해를 채택하였다.⁴⁴⁾ 12해리 영해정책은 1982년 11월 24일 제정된 「蘇聯國境法」(Law on the State Boundary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에서 재확인되었다.⁴⁵⁾ 이러한 입장은 1991년 12월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후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에 의해서도 견지되고 있다. 즉 러시아는 1993년 4월 1일 「러시아聯邦國境法」(Law on the State Boundary of Russian Federation)을 제정하여 12해리 영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⁴⁶⁾

한편 구소련은 1977년 「沿岸接續水域에 있어서의 生物資源의 保存과 漁業規制에 대한 暫定措置에 관한 소비에트 최고회의 간부령」을 제정하여 EEZ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⁴⁷⁾ 구소련은 그 후 동 법령에 대신하여 1984년에 200해리 EEZ를 선포하였다. 이와 같은 200해리 EEZ의 설정은 러시아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2. 일본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宣布 및 獨島領有權 主張의 背景

엄격하게 말하면 일본의 EEZ 선포에 따른 한·일간의 경계확정문제와

43) 위의 글; 「문화일보」, 1996년 2월 15일.

44) 「蘇聯國境保護法」 제3조. Kazimierz Grzybuwski, *Soviet Public International Law: Doctrines and Diplomatic Practice* (Leyden: Sijthoff, 1970), p. 50.

45) 「蘇聯國境法」 제5조 1항.

46) 「러시아聯邦國境法」 제5조 1항.

47) 山本草二, “200海里經濟水域,” 「ジュリスト」, 1977년 9월 1일, p. 36.

독도문제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전자는 해양관한권 중첩에 따른 해양법상의 경계획정문제인데 비해, 후자는 영유권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선포하려는 200해리 EEZ 내에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가 들어가 있고, 최근 일본이 EEZ 선포방침 결정을 계기로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양자를 분리하여 각기 일본이 취하는 조치 또는 발언의 배경과 의도를 일별하기로 한다.

가. 排他的 經濟水域 宣布背景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 배경에는 다음 몇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무엇보다 지적할 것은 1994년 11월 16일 유엔해양법협약이 정식 발효 되었다는 사실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은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EEZ 선포의 권리를 아무런 장애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⁴⁸⁾ 또한 그러한 권리행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본국내에 널리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어민들의 권익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대정부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즉 그동안 일본어민들이 정부에 대해 조속히 일본 주변해역에 대해 EEZ를 설정하여 동 해역에서 타국 어선의 입어를 규제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일본정부로서도 더이상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일본이 EEZ를 선포방침을 결정한 것은 장래 주변국과의 해양관할권 경계획정분쟁에서 유리한 협상고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이 2월 20일 200해리 EEZ 선포방침을 발표한 것은 한국과의 EEZ경계선 획정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일본은 그들의 과제로 인식하는 주변국과의 몇가지 영토문제를 해

48) 1996년 1월 말까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EEZ를 선포한 국가는 95개국이다.

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토문제 계류도서 주변수역을 분쟁수역화하려고 잔란적인 목적에서 EEZ 선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EEZ 선포방침 결정 이후 일본의 태도를 보면, 일본이 EEZ 선포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독도문제에 대한 기존의 일본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한·일간의 외교교섭사에 기록해 두려는 의도가 더욱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을 수 없다.

나. 獨島妄言의 背景

1996년 2월 20일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방침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앞서 2월 9일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外相은 “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일본의 동의없이 접안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발언함으로써 獨島妄言의 파문을 일으켰다. 이케다 외상의 발언은 2월 10일 일본 외무성에 의해 공식 확인됨으로써 그동안 휴면 상태에 있었던 한·일간의 독도분쟁이 재연되게 되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아무런 법적·역사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도망언을 하게 된 배경과 의도는 여러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우선 이케다 외상의 망언은 우익성향이 강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정권 출범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일본 전물자유족회장까지 지냈던 하시모토가 총리에 선출되면서 한·일 간 외교관계상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가 독도망언으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의 독도망언은 오래전부터 이에 짜놓은 사전각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작년 10월 에토 총무청장관이 행한 한일합방 미화 등 역사왜곡 발언이나 일본내 大東亞戰爭의 정당성 주장에 대한 홍보강화 움직임에 이어 이케다의 독도망언은 모두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화 기도 및 극우·보수화 경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역사문제로 인한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이 한국의 승리로 끝난 이후 감정이

많이 상한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외교적 공세 내지 반격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던 차에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을 계기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보인 강도높은 대응은 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독도망언에는 이러한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⁴⁹⁾

셋째, 독도에 대한 한국의 평온무사한 주권행사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장차 본격적으로 제기될 독도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넓혀 놓자는 것이다. 또한 독도에 대한 강한 영유권 주장을 앞세워 한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상 및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일본은 독도문제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leverage)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2차대전후 러시아에 편입된 북방 4개 도서문제와 연계하여 만일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면 똑같은 논리로 러시아가 실제 점유중인 북방 4개 도서도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것이다.

다섯째, 독도망언이 일본의 정치권이 국내정치적으로 수세적 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는 우려했던 분석시각도 만만치 않다. 즉 연일 주택금융전문회사(住專)의 부실채권문제로 인해 집권여당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호재로 독도문제를 이용했다는 것이다.⁵⁰⁾

아무튼 일본은 이상과 같은 다목적의 포석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하여 한·일간에 외교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당분간 손해볼 것이 없는 카드로서 독도문제를 제기, 이를 잇슈화시켜 국내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당한 이득을 취할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9) 諸成鎬, “日本の 獨島妄言과 韓國의 對應方向,” 「高友經濟」, 제15권 1호 (1996), pp. 33~34.

50) 「中央日報」, 1996년 2월 10일.

IV. 일본의 EEZ 宣布의 影響 및 波及效果

1. 韓·日關係에 미치는 影響

일본의 EEZ 선포는 한·일어업관계는 물론 동북어의 어업질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가. 한국의 맞대응조치 : 200해리 EEZ 선포와 경계획정문제 발생

과거 일본이 선포한 「漁業水域에 관한 暫定措置法」(EFZ)은 동해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한·일간의 어업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지금 제정하려는 「排他的 經濟水域法」은 태평양연안은 물론 동해에도 적용될 예정인 바, 우리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200해리 EEZ를 선포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일간에 EEZ 경계획정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직선거리가 400해리를 넘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 현실적으로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⁵¹⁾

한편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아직까지 정부간 또는 민간어업협정을 체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황해나 동지나해에서의 양국어업에 관한 법률적인 정비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1992년 8월 한·중수교를 전후하여 우리 정부는 양국간에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의 규제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양국관계에 미칠 정치·외교적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중국어선들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영해를

51) 한·일이 대항하는 연안간의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은 대한해협이며, 그 중에서도 最狹의 수역에서는 대안간의 거리가 23해리에 불과하다.

포함한 근해에서의 중국어선에 의한 어종남획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⁵²⁾ 이 때문에 현재 한국과 중국은 어업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만일 한국이 일본의 EEZ 선포에 대응하여 자신의 EEZ를 선포할 경우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경계획정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일본의 EEZ 선포는 한·일, 한·중, 일·중간의 EEZ 경계획정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동북아 어업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韓·日漁業協定 및 東北亞漁業秩序에 미치는 波及效果

전술한 바와 같이 EEZ라 함은 인접해역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등을 위해 연안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서 연안국은 EEZ을 영해 기산점으로부터 200해리의 범위내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EEZ 선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장(제55조~제75조)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일반국제법상의 권리이다. 따라서 일본이 동 수역을 선포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法的 瑕疵가 없다.

다만 일본의 EEZ 선포는 한·중의 EEZ 선포를 초래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법적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기존 동북아 해양에서의 어업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한 문제로서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존속 또는 효력연장 여부, 1980년 10월 체결된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해역에서의 조업자율규제에 관한 한·일간 합의書翰」의 效力延長問題,⁵³⁾ 한·일간, 한·중간, 일·중간, 러·일간 및 북·중

52) 「東亞日報」, 1993년 9월 12일.

53) 이 합의서안은 그후 1983년, 1987년, 1992년 그리고 1995년 4차례에 걸쳐 효력이 연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EEZ 선포 그 자체가 동 합의서한이나 한·일어업협정을 직접 폐기하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EEZ 선포조치로 인해 이러한 합의서한이나 어업협정을 표기하고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여 기존 어업질서를 전면 재편할 것인지, 아니면 현존하는 협정을 약간 개정하여 기존의 어업질서를 일부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협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연장함으로써 당분간 한·

간 EEZ 경계획정문제⁵⁴⁾ 등은 그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EEZ 선포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어업협정의 존속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 韓·日漁業協定은 동해수역을 어업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 및 공동자원조사수역으로 나누어 각각 한·일의 관할권행사범위를 차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200해리 EEZ는 이러한 수역과 충돌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EEZ 선포가 한·일어업협정을 종료하는 문제, 이 협정하에서 기존의 어업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 한·일간 獨島紛爭 再燃

일본의 EEZ 선포조치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영유권분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일간 독도영유권분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일간의 독도분쟁은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민족감정이 개재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양국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거나 포기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독도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은 상당한 시일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2월 9일 이케다 외상의 독도관련 발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그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이를 외교적 문서에 기록해 둠으로써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그대로 默認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제스처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방기함으로써 독도에 대해 국제법상 時效에 의한 영토취득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일간의 어업질서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피할 것인가 하는 여러 대안중 어떠한 입장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사안은 차원을 EEZ 선포 그 자체와는 달리하는 법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4) 이들 국가들간에 있어서는 어느 대항국간의 거리도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므로 경제수역 선포시 필연적으로 경계획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일·북한간의 경우는 兩岸의 거리가 400해리를 초과하므로 경계획정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 물론 일본의 EEZ 선포와 이케다 외상의 독도발언은 그동안 휴면상태에 있었던 한·일간의 독도분쟁을 재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EEZ 선포는 일·중간 釣魚臺 영유권분쟁,⁵⁵⁾ 러·일간 북방 4개도서 영유권분쟁을 촉발시킴으로써 동북아 역내국가들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2. 南北韓關係 및 日·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가. 北韓의 反應과 豫想態度

일본이 2월 20일 EEZ 선포방침을 결정한 이래 북한은 일본의 EEZ 선포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대략 3가지 정도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우선 연안국이 EEZ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유엔해양법협약이라는 일반국제법에 의해 인정되어 있고, 둘째, EEZ 제도가 이미 다수의 국가에 의해 채택되어 일반적인 제도로서 이미 확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북한 자신도 1977년에 EEZ를 선포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일본의 EEZ 선포를 문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신 북한은 일본의 EEZ 선포방침 자체보다는 일본이 설정하려는 EEZ 내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독도영유권 주장)에 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6년 2월 9일 일본의 이케다 외상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2월 10일과 2월 13일 민민전방송을 통해 “영토팽창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관해 한국정부를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⁵⁶⁾

55) 일본에서는 釣魚臺를 尖閣(센가쿠)列島분쟁으로 부른다.

56) 그동안 북한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보여 온 입장(반응)은 무수히 많다. 북한은 “일본의 중·고교 지리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은 일본인들의 영토팽창 야망을 실현키 위한 책동에 불과하다”(1996년 2월 6일자 「민민전방송」),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팽창 야망

먼저 2월 13일자 민민전방송은 “2월 9일 이께다 일본 외상의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은 무지막지한 역사 위조행위로서 일본의 범죄적인 영토팽창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주장은 공화국이 과거 반성과 함께 성의있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때에 나온 것으로, 이는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일본의 주장은 김○○ 일당의 비굴한 대일 저자세와 관련된 것으로 그들의 매국매족 책동을 단호히 분쇄키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월 10일자 민민전방송은 “이께다외상과 외무성 아시아 국장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의 방과제 건설 추진은 주권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고 떠들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며 침략적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범죄행위이다.”라고 강변하였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민민전방송의 보도(북한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形式面에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일본의 EEZ 선포움직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⁵⁷⁾ 대남 지하흑색 선전매체인 민민전방송을 통해서만 일본의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한국의 대응태도를 보도하고 있다.

둘째, 內容面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영토팽창야망을 드러낸 범죄적 침략행위로 비난하고 있다.

셋째, 意圖面에서 일본의 호전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일본의 과거반

을 버리지 못한 낱강도 늑음이다”(1995년 9월 27일자 로동신문 논평), “독도가 역사적으로 공화국의 영토라는 것은 명백하며, 공화국만이 독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1974년 6월 평양방송, 1974년 6월 7일자 일본 외무성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반응)”는 것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57) 북한은 1996년 2월 28일자 조선중앙방송 및 평양방송을 통해 “보도들에 의하면 최근 일본 정부가 200마일 경제수역 설정을 결정함으로써 주변 나라들과의 영토분쟁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였다.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제269호 (1996. 2. 25~3. 2), p. 32.

성과 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의 대응을 소극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한 대남투쟁과 한국내에서의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보아 향후 북한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한·일간 외교적 마찰의 추이를 지켜 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동 사안을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과오로 왜곡시켜 대남투쟁을 선동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편, 과거청산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일수교 협상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⁵⁸⁾

나.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

(1) 直接的 影響

일본의 EEZ 선포조치로 인해 남북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그러나 한국이 경제수역을 선포할 경우 남북한관계에서도 경제수역 경계획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남북한간의 경계획정문제라 함은 ① 동해안에서의 EEZ 경계획정문제와 ② 울릉도 북방의 EEZ와 북한의 EEZ간의 경계획정문제, 그리고 ③ 서해 5도 주변수역의 경계획정문제로 대별된다.

특히 ②의 경계획정문제가 새로이 제기되는 이유는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 3항에 의하면, ① 독자적인 경제생활(economic life of their own)과 ② 인간의 거주(human habitation),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는 그 자체의 대륙붕과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도는 그 자체 200해리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바,⁵⁹⁾ 결과적으로 울릉도 주변의 경제수역과 북한측 경제수역간의 경계획정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58)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제267호 (1996. 2. 11~2. 17), pp. 30~32 참조.

59) 울릉도에 비해 독도는 외부의 원조 없이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상 독자적으로 대륙붕과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間接的 影響.

(가) 北·日 修交交渉에 대한 영향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77년 6월 중앙인민위원회 政令을 통해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동년 8월부터 이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일본의 경제수역 선포 그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 또 북한과 일본간에 마주보는 연안간의 거리가 400해리를 초과하므로 EEZ 경계확정문제가 일·북한간 수교교섭의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일·북한 수교교섭의 쟁점사항의 하나인 관할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독도영유권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있다. 그동안 북한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서는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全韓半島가 북한의 영토라는 전제하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북한영토에 대한 침략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북한간 수교협상시 동문제를 관할권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하자고 제의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의 韓·日關係 離間 기도가가능성

현재 대북 경수로지원, 쌀지원 및 북·일관계 개선문제 등 현안과 관련하여, 한·일간의 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수역 선포로 인해 양국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한·일관계를 이간시키려 기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일간의 협조체제가 이완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경우, 대북 쌀지원문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통한 대북 경수로지원문제, 일·북한간 관계개선 속도조절 등 대북정책에 대한 한·일공조체제를 본격적으로 와해시키려 할 것이다.

(다) 變則的 南北對話 제의가능성

북한은 한·일관계가 경색될 경우, 이를 대북 경수로 지원, 식량추가 지원 등 남북관계 현안을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데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북한 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미·북한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대북 경수로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미·일의 압력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경우, 북한이 독도영유권문제에 관해서 일본에 대해 공동대처하자는 내용의 회담을 남한에 제의해 올 수도 있다.⁶⁰⁾

V. 韓國의 對應方案

우리 정부는 확고한 기본원칙과 입장에 따라 의연하게 일본의 EEZ 선포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한 원칙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일본의 EEZ 선포가 전통적인 한·일관계에 훼손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EEZ 선포로 인한 한·일관계 경색을 이용하려는 예상가능한 북한의 행동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남북관계 및 북·일관계의 조화·병행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관계 현안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기로 한다.

60) 이와 관련, 과거 북한은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해 남한에 대해 공동대처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1. 經濟水域問題

가. 韓·日間 漁業 및 經濟水域問題

일본이 EEZ을 선포할 경우 우리 어민들의 일본근해 어업에 많은 피해를 줄 것인 바, 일본과의 교섭하에 한·일간 新漁業協定 締結前까지는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잠정기간 동안 우리 어민의 北海島 주변에서의 어업권을 보호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⁶¹⁾

그리고 일본이 EEZ를 선포할 경우 한국도 EEZ 선포로 대응하되, 한·일어업협정 개정과 양국간 EEZ 경계획정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EEZ 경계획정문제는 해양법상의 기술적 문제이므로 이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키지 않고, 양국간 실무차원에서 풀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南北間 經濟水域問題

한국의 EEZ 선포시 불가피하게 남북한간에 EEZ 경계획정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계획정문제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이 ① 동해안에서의 EEZ 경계획정문제, ② 울릉도 북방의 EEZ와 북한의 EEZ간의 경계획정문제, ③ 서해 5도 주변수역의 경계획정문제로 대별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해결을 위해 남북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당분간 남북한은 기존의 관행을 묵인·존중하는 차원에서 EEZ 경계획정문제를 방치하고 동 문제를 적극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서해 5도의 주변수역의 경우 남북한은 北

61) 한편 일본의 EEZ 선포후 한·일어업협정의 존속 내지 개정여부에 관해서는 金明基, “韓·日 배타적 경제수역과 독도영유권,” 「자유공론」, 1996년 4월호, pp. 125~127; 李仲範, “韓·日間 EEZ협상;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자유공론」, 1996년 6월호, pp. 154~163 참조.

方限界線(Northern Limited Line : NLL)을 묵인할 것이며,⁶²⁾ 동해의 경우 北方境界線(Northern Boundary Limited Line)⁶³⁾을 따라 EEZ 경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이 EEZ를 선포할 경우, 울릉도 북방수역이 특히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정부는 울릉도 북방의 북한 인접수역에 대해서는 ① EEZ 선포를 유보할 것인지, 아니면 ② 동 수역에 대해서도 EEZ를 선포하되, 구체적으로 획선만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③ EEZ 선포와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략 중간선에 따라 EEZ 획선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들 방안들은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인 바, 장단점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1978년 우리 정부는 領海法 施行令을 제정하면서 북한측 지역에 대해서는 영해의 기선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바 있다. 남북한간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에 비중을 둔다면 첫째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셋째의 방안 선택시 북한이 우리의 입장에 대해 반대할 경우에는 우리의 정책적 선택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

62) 서해의 경우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8월 서해 5도와 북한지역간에 있어서 대체로 中間線(median line)에 해당되는 북방한계선을 설정하고 북한측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북한측은 여기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후 이 북방한계선은 남북한간에 20여년 동안 상호 묵시적 합의하에 존중되어 왔다. 즉 우리측은 서해 5도에 출입항하는 민간선박에 대해 우회항로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기존의 어로한계선을 하향조정하여 북위 37도 55분 동경 124도(백령도 남단), 북위 37도 25분 동경 125도 43분, 북위 37도 25분 동경 125도 50분 및 강화도를 잇는 선으로 어로한계선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한편 북한측도 해주에 출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북방한계선의 북방항로를 이용토록 해 왔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1973년 12월 1일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서해 5도에 대한 우리측의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서해 5도 주변에 대해서 이른바 沿海權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서해 5도 주변수역에 대한 북한의 행동과 법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金明基, “西海5島嶼의 法的地位,” 「國際法學會論叢」, 제23권 제1·2호 합병호 (1978), pp. 323~337 참조.

63) 여기서 북방경계선이라 함은 육상의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위도와 평행으로 연장된 선, 즉 軍事分界線 延長線(Military Demarcation Line Extended)을 말한다. 동해에서의 이 북방경계선은 북위 38도 33분을 따라 획선되고 있다.

북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대체로 둘째 방안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부는 일차적으로 둘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본격화되어 여러 분야의 현안문제를 처리하고 조정해야 할 경우, 정부는 EEZ 경계획정문제를 북한에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로서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먼저 동·서해안의 경우 北方限界線과 軍事分界線 延長線을 그대로 EEZ의 경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법상 인접수역 경계획정의 일반원칙인 等距離原則에 따라 남북한간의 EEZ 경계를 새로이 획정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정부방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는 울릉도 주변수역과 북한의 EEZ간 경계획정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77년에 EEZ를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EEZ를 선포하면서 경성과 두만강 하구의 나주리를 연결하는 직선기선(북한은 이를 灣口閉鎖線이라고 부르고 있다)을 EEZ 설정의 기선선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러한 영해기선선은 기선설정의 합법성 평가를 위한 몇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법적인 경계선으로 평가되고 있다.⁶⁴⁾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EEZ를 설정하는 기선을 합법적인 기선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북한의 기선을 인정할 경우 그 다음으로는 북한 EEZ와 울릉도 주변수역간의 경계획정을 중간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획정할 것인가를 협의·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EEZ 경계획정문제와 관련, 남북한간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

64) 북한의 영해기선선이 불법적인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북한의 동해안이 일률적으로 直線基線을 그어야 할 만큼 '굴곡이 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둘째, 북한의 영해기선선으로 직선기선은 해안선의 一般的方向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 있으며, 셋째, 북한의 기선이 이 수역에서 자국의 특수한 경제적 이익의 존재를 들어서도 이를 정당화되 어려우며, 넷째, 북한이 동 기선내의 수역을 만(경성만 또는 동한국만)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해양법상 만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와 한·일간에 협의되어야 할 문제를 엄격히 분리하고, -물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전자가 북·일간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이를 차단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문제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또는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여 여기에서 해결할 것을 제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⁶⁵⁾

2. 獨島 領有權問題에 관한 對應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의 固有한 領土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역사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허구적인 것이라 하겠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주장이나 1905년 2월 22일 이른바 島根縣告示이라는 지방의 한 고시(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에 의해 無主地인 독도를 선점했다는 주장은 신라 지증왕시대 異斯夫가 신라에 복속해 온 이래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존재해 왔고, 따라서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영토취득을 위한 국제법원칙에 배치되는 부당한 억지라 할 것이다.⁶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문제가 양국간의 분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독도분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일 양국의 국민감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확고하고도 의연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일본의 돌출적인 행동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특히 독도문제는 영유권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國際司法裁判所(Inter-

65) 남북 불가침경계선 확정문제는 군사공동위원회 소관사항이나 경제수역 경제획정문제를 군사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남북한관계 개선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군사분계선에서 인접한 동서해안의 해역에서 남북한간의 경제수역 경계가 확정될 경우, 동 경계선은 사실상 불가침경계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6)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평가에 관해서는 李漢基, 「韓國의 領土」(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金明基, 「獨島와 國際法」(서울: 華學社, 1987) 참조.

national Court of Justice : ICJ)에 회부하여 해결하려는 일본의 입장에 호응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땅은 한치도 내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몇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과시하는 방안으로 독도주변에 접안시설(부두 또는 정박구)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독도접안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독도수비대의 인원을 증원하고 해양순시선에 의한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어선의 한국영해 침범시 영해법 위반으로 이를 拿捕·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재발방지를 기해야 한다.

셋째, 아울러 독도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및 연습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해양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3. 북한의 韓·日關係 離間企圖時 對應

정부는 일본의 EEZ 선포와 독도영유권주장을 계기로 북한이 한·일관계를 이간시킬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정부는 현단계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됨을 강조하고, 특히 북한의 식량문제 등 경제난, 북한핵동결 및 대북 경수로지원 등과 관련하여 한·일간의 협조가 중요함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로 인해 전통적인 한·일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여 일본의 강경한 태도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⁶⁷⁾

67) 예컨대 정부는 「한·일포럼」 등 민간기구를 활용하여, 양 정부에 냉정하고도 차분하게 EEZ 경계획정문제의 협의를 건의하고, 독도영유권문제에 관해 한·일 양국의 학자들간의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의 변칙적 南北對話 提議時 對應

정부는 당국간 대화원칙에 입각, 통일전선 차원의 회담이나 한·일공조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의 남북대화 제의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북한이 특히 독도문제에 관해 대일 공동보조를 취하자고 제의해 올 경우, 독도문제와 한·일간 EEZ 경계획정문제는 남한의 內部問題(내부문제 중에서도 對外關係事項)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부당한 간섭기도를 중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 結 論

일본의 EEZ 선포는 국가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타국이 문제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일본의 조치로 인해 동북아의 연안국들간에 기존어업질서 조정 또는 상호 중복되는 경제수역에 대한 경계획정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多者間 漁業機構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수역 선포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한·일간 또는 중·일간 등 양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문제는 독도영유권문제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양자를 함께 처래해 나가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일본의 영유권주장이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원칙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부당한 억지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는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면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문제와 독도영유권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마찰을 한·일관계 이간의 기회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동 문제들이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이나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언론

이 일본의 EEZ 선포와 독도문제를 과열보도하여 한·일 양 국민의 민족감정을 자극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리 언론에 대해 일본의 EEZ 선포문제 및 독도문제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아울러 일본측에 대해서도 대언론 협조를 요청하여 냉정하게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것을 제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